

정부의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3월 10일(목) 개최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이하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대기업·정규직 부분의 경직성·불공정성 개선, 상생고용을 통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1.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하여 「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하도급대금 보호 등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원청기업과 하청·협력업체 사이에 성과공유, 고용구조 개선, 산업안전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현장지도·감독을 실시, ③ 정규직 채용 관행 유도, 주요 산업공단에 불법파견 등 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체불 제도 개선 및 민·관 협업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강화, ④ 4대분야(비정규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장시간 근로, 불공정 인사관행)을 중심으로 총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를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 파견·비정규직 근로자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금년도 총 2만개 사업장에 대해 4대분야(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 근로개선, 불공정한 인사관행 근절)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정기·수시 근로감독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점검합니다. 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근로감독관 규정을 개정해 중요범죄에 대해 시정기간 없이 사법처리하고, 시정기간 또한 단축하였습니다.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존재 여부,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불공정 인사관행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 고용 등 불공정 인사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실시 및 위반 시 엄중 처벌원칙을 세웠습니다.

3. 경상 동남권과 경기 서남권의 불법파견 집중 단속

또한 올해 상반기 주요 산업공단에 대한 불법과건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간헐적 과건활용이 높은 경기 서남권(안산 등)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남 동남권(울산, 창원 등)이 2016년도 상반기 집중 단속 권역입니다. 그 동안 실시하여 온 1회적 감독-제재방식과 달리 사전실태조사 후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미개선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이 실시됩니다.

4. 대응방안

고용노동부가 이번 상생고용 촉진대책에 따라 권역별 주요 산업단지 불법과건 등 범위반 사항과 비정규직 차별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법과건 단속은 경기 서남권과 경상 동남권 소재 사업장에 올해 상반기 추진되는 일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상당히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 과건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내하청 등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불법과건 여부,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영석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21	E-Mail. ysgi@shinkim.com
● 박성기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80	E-Mail. skipark@shinkim.com
● 김동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1646	E-Mail. dwokim@shinkim.com
● 김종수 변호사	TEL. 02 316 1678	E-Mail. jsokim@shinkim.com